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329 |
|----------|------|

2020. 03. 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5.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 2. 12.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03.06.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

1. 제안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 전부개정(시행 '19.3.28)

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와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법 개정 경위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은 그간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에 따른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3월 27일 전부개정 되었음.

개정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과 舊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이 법으로 통합되었음.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흐름〉 ※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조례 제정 경위

-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5526호)¹⁾에서는 승강기안전부품²⁾과 승강기³⁾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⁴⁾’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를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
- 참고로 법 시행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서울

1)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2018.3.27. 전부개정, 2019.3.28. 시행).

2)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부품’을 의미하며(법 제11조제1항). 이는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총 20개 부품으로 이루어짐. (붙임-1 참고)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의미함(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하며(영 제18조제3항),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의미함(영 제21조제3항).

시에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의 공백으로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하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제정안 주요 내용**

-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이에 기초하여 마련된 조례안은 총 5개 조문⁵⁾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조 문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법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제2호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조례안 제2조 |
| 법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제2호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조례안 제3조 |
| 법 제76조(수수료)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의 수수료 부과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조례안 제4조 및 별표 |

- (안 제2조 및 제3조) 승강기부품이나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부품이나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서식

5) 제1조(목적),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4조(수수료), 제5조(보고)

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토록 하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확인절차를 거쳐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법 제78조제2항과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시·도지사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 업무와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4조)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면제 확인 수수료는 1)현장심사 수수료(심사비용x2명x심사일)와 2)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 (안 제5조)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으로 하여금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제2호바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수료징수 근거법령을 개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하였음. 참고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 결론

-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내 수출용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관련업체들의 비용경감 및 시간절약을 도모함으로써 승강기 관련 수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

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 구분 | 수수료 |
|-------------------|--|
|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p>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p> <p>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p> <p>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p> |
|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p>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p> <p>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p> <p>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p> |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사 | 제조국가명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안전 부품 | 승강기안전부품명 | 모델명 | |
| | 정격전압/전류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모델 구분 (필요시 별지 사용) | |
| | 수량 | 금액 | |
| | 사용장소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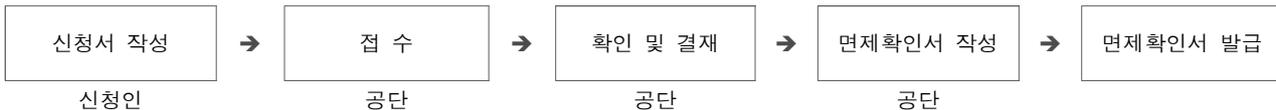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 |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사 | 제조국가명 | |
|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안전부품명 | 모델명 |
| | 정격전압/전류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모델 구분 |
| | 수량 | |
| | 사용 장소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사 | 제조국가명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 |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 모델명 | |
| | 정격전압/전류 | 모델구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 | 수량 | 금액 | |
| | 사용장소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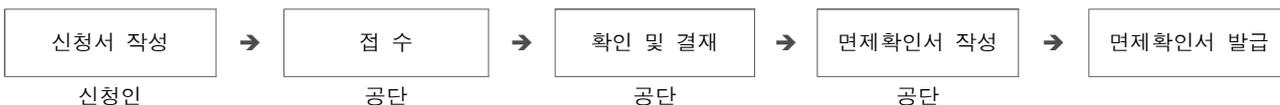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 | |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제조사 | 제조국가명 | |
|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 |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 모델명 |
| | 정격전압/전류 | 모델 구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 수량 | |
| | 사용장소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